

## 자산보관 •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
 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### 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프랭클린템플턴 포커스 증권자투자신탁 (주식)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 [주식형] 집합투자기구
- 다. 보관 • 관리기간: 2011.09.29 - 2012.09.28
- 라. 집합투자업자: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(주)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교보증권, 한국투자증권, 대우증권, 유진투자증권, 현대증권, 한화투자증권, 동양증권, NH농협증권, 삼성증권, 동부증권, 미래에셋증권, 키움증권, 하나대투증권, 이트레이드증권, 우리은행, 대구은행,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, 외환은행, 한국씨티은행, 홍콩상하이은행, 신한은행, 미래에셋생명, 케이비투자증권, 아이엔지생명보험, 유화증권, 신영증권

### 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2.04.26	제 49 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<u>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</u>	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. <u>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</u>
2012.04.26	<부 칙> 제 1 조(변경계약의 시행일)	(신설)	<u>이 신탁계약의 변경은 2012년 5월 일부부터 시행한다.</u>

### 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없음

### 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### 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## 6. 회계감사인의 선임 • 해임에 관한 사항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		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
삼일회계법인	1년	275만원	서면계약	-	-	-	-	-

\*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.

## 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  - 부합함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 - 적정함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 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  - 공정함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  - 적정함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  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  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## 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